

사업용 친환경차량 연료보조금 지급대상 및 단가 재검토 연구

- 제안요청서 -

2023. 3

국 토 교 통 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목 차 -

I. 연구영역의 개요	1
II. 과업의 주요내용	3
III. 과업 수행지침	5
IV. 보안대책	12
V. 보고서 제출	15
VI. 과업의 추진계획 (예정 공정표)	16
VII. 제안 관련 일반사항	17
VIII.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20
IX. 평가방법 및 기준	22
[참고] 과업 제안 관련 서식 모음	26

I 연구영역 개요

1. 용역명

- 『사업용 친환경차량 연료보조금 지급대상 및 단가 재검토 연구』

2. 예산 : 80백만원 (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개월(180일)

4. 추진배경 및 목적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차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사업용(버스, 택시, 화물) 수소 자동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 결정***

* 버스 : '21.9월, 화물 : '22.6월, 택시 : '23.11월(예정)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40년까지 **수소사용차 15만대 보급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현행 수소자동차 연료보조금 지급단가* 선정 기준 등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지급단가 :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의 연료비용 차이만큼 지급
- 버스 : 3,500원/kg, 수소-전기차의 연료비 차이
- 화물 : 4,100원/kg, 수소-경유차의 연료비 차이
- 택시 : 미정

- 2023년 **택시 수소자동차 연료보조금 지급을 위해 차량의 연비** 등을 실증하고, 실증결과에 따른 **지급단가 산정기준 마련 필요**
- CNG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방안 검토 필요**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시행 중 : '22.5.1~23.4.31(12개월)
-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하여 사업용 전기 차량의 **연료보조금 신설 방안 등** 정책추진 방향 필요

5.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국가 통계 발표 시기를 고려하여, 필요 시 우선적으로 2022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분석 추진
- 자료수집이 어려운 경우 구독 가능한 최신자료를 활용함
- 주요 대상 범위
- 전기차와 수소차를 연료로 사용하는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 친환경 차량을 대상으로 함
- CNG차량은 여객운송 중 버스만을 대상으로 함
- 내용적 범위
- 여객 및 화물운송 산업의 업종별 차량 현황
- 연료보조금 현황 및 친환경 사업용 차량 연료조금 가격 분석

1. 사업용(버스,택시,화물) 수소상용차 연료가격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 사업용(버스, 택시, 화물)차량의 차종별 등록대수 및 연료 현황
- 연료별 가격구조 및 운행 비용 현황
- 연료별 가격 동향 및 연료보조금 현황
- 수소 연료보조금 관련 정책 및 개선 시사점 제시

2. 사업용(버스,택시,화물)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단가 조사 및 분석

- 사업용 수소 차량 월별 증가 추이
- 사업용 수소 차량 연료보조금 지급단가 조사 및 분석

3. 사업용(버스,택시,화물)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단가 산정기준 (안) 마련

- 차종별 수소 차량 운행 특성 분석
- 수소자동차 연비 조사 및 분석
- 수소 연료보조금 재원 분석
- 차종별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단가 산정기준 도출

4.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방안(안) 마련

-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필요성 분석
- CNG 유가연동보조금 재원조달 방안
-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산정기준 도출

5. 연료보조금 제도의 전반적 검토를 통한 정책 추진 방향 제시

- 해외 연료보조금 제도 유사사례 조사 및 분석
- 사업용 친환경 자동차 전환 촉진을 위한 연료보조금 제도 개편방안 제시
 - 전기자동차 연료보조금 신설 방안 등 고려

1. 행정 및 일반사항**가. 용어의 정의**

- 과업지시서에서 국토교통부를 “발주처”,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한다.
-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되, 이견 발생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나. 관련연구 결과 및 자료의 활용

- 본 과업에 활용할 기본통계 및 조사 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시도 등이 수립한 관계계획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조사결과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계계획의 연구결과, 조사자료 이외에 본 과업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사항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과업수

행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관련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 시 현장점검, 조정회의 등 관계기관회의에 참석하여 대안분석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의 인쇄 및 납품도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처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 평가 보고서 제출 시 본 연구 결과의 보존과 확산·활용의 측면에서 연구의 관련된 모든 관련자료, 성과, 개선필요 사항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평가보고서(CD 포함)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용역자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발주처에 대하여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 과업수행자의 직원이 본 과업 수행상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할 때는 인원을 조속 교체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이행이 지연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용역기술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과업수행자를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 등을 지정된 납기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7 -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인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승인,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수정, 보완한다.
- 용역수행결과와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카. 지식재산권의 소유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하되, 발주기관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배포·제작·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특별사항

가. 자문회의

- 연구책임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교통관련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수행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 할 수 있다.
- 자문회의는 연구기간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과업별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 자문회의 개최시기 및 자문사항은 과제별 연구진행상황에 따라 발주

- 9 -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아. 특허권의 사용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과업지시서, 용역비의 변경 및 정산

- 연구기관은 과업기간, 과업범위, 과업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용역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지시서 및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다.
- 또한, 과업의 수행 중 다음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건비 및 경비는 실제 투입한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비를 용역사업 관리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행

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 8 -

나. 연구자료의 공유

- 발주처와 과업수행자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 원활한 용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기타 사항

- 본 용역의 과정에서 과업수행자 상호 간에 이견이 발생할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한다.
- 과업의 수행은 대표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 10 -

IV **보안대책**

- 용역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 제 906호)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의거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과업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책임자는 과업참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이 현지 보안관리상태 및 보안대책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용역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과업수행 대표자의 책임으로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으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용역기관이 법적, 도의적 모든 책임을 진다.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과업 책임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자료 결과 등은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과업수행 중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자료,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은 필요한 부수만 발행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임의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페이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하에 철저히 파기(소각, 파쇄 등)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V **보고서 제출**

1. 성과품

구 분	제출기일	제출부수
최종보고서(안)	과업 준공 1개월 전	1부
최종보고서	과업 완료시	3부
최종보고서 USB	과업 완료 후 1주 이내	1EA

※ 최종보고서는 보고서와 USB로 제출함

2. 보고서 작성

- 가.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나.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처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과업의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현황 및 문제점	■					
2. 사업용 수소 상용차 연료가격 등 현황조사 및 분석		■				
3. 사업용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단가 조사 및 분석			■			
4. 사업용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단가 산정기준(안) 마련			■			
5. 버스에 대한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방안(안) 마련				■		
6. 사업용 전기 자동차 연료보조금 지급단가 산정기준(안) 등 마련					■	
7. 보고회 및 자문회의 등	■		■			■
8. 보고서 작성					■	■

2. 제안서 제출 방법

-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 나. 접수처 : **온라인 제출**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
 ※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우편접수 불가함
- 다.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 및 문의
 ○ 열람 및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 연락처 : 044-201-3824
-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 마. 제안서 설명 및 평가 : 발주기관에서 일정 별도 통보

3.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가. 일반사항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 시 추가하거나 변경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30매 이내로 하며 전자문서(pdf)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가급적 논리적·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결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1. 참가 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 시 확인서 제출요)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나.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VIII 계약 상대자 선정 방법

1. 입찰방식 : 경쟁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선정절차

- 제안서 기술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분야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후 업체 선정
 -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제안서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서 기술평가
 -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기술 평가 수행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붙임 기술평가표 참고
-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IX 평가방법 및 기준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제안업체 일반현황 (10)	기관평가	- 기업신용평가 등급	5	계량평가
	연구인력	- 책임연구원의 경력	5	계량평가
과업수행부 (80)	제안서 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10	비계량평가
	과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유사 연구용역과의 중복 및 병행 가능성	30	비계량평가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평가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0	비계량평가
	연구조직 구성	- 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절성	5	비계량평가
	기타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5	비계량평가
계			90	

(2)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기관평가(5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책임연구원 경력(5점)

구 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점 수	5	4	3	2

- 책임연구원 평가는 경력증명서상의 해당분야에 대한 참여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음

등급	참여 연구진 평가기준
(가)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7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11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술사
(나)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4년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다)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라)급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 책임연구원의 해당분야는 교통관련사업 및 법무업무에 한함
- * 증명서류 제출

(3)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80점)

구 분	배점 (A)	평가정도					
		매우우수 (점수=A×1)	우수 (점수=A×0.8)	보통 (점수=A×0.6)	다소 미흡 (점수=A×0.4)	미흡 (점수=A×0.2)	
과업수행부	제안서 개요	10	10	8	6	4	2
	과업 접근방법	30	30	24	18	12	6
	수행계획	20	20	16	12	8	4
	응역관리 및 사후관리	10	10	8	6	4	2
	연구조직 구성	5	5	4	3	2	1
	기 타	5	5	4	3	2	1

(4)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특점의 합계

2. 입찰가격 평가(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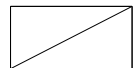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참고

과업제안 관련 서식 모음

【서식 #1】

서 식 일 랫



1. 과업제안서(표지)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3.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4.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6. 보안서약서
7. 청렴계약서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사업용 친환경차량 연료보조금 지급대상 및 단가 재검토를 위한 정책연구

제안사명 : (인)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단위 : 천원)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2020년	2021년	2022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총자본					
10.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관련 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외부 참여자는 제외)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성 명		소 속		직 계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본 과업 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

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용 친환경차량 연료보조금 지급 대상 및 단가 재검토를 위한 정책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양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